박사후과정연구원규정

제정 2009.1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박사후과정연구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박사후과정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4조(복무 등) 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박사후과정연구원은 본교의 교육방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박사후과정연구원은 본교 교직원에 준하여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 등) 박사후과정연구원은 학장(대학원장) 또는 각 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임용한다.

1. 소속 :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소속은 각 연구소로 한다.
2. 임용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을 연장할 경우 1년 이내의 단위로 매년 새로이 계약하여야 하며 총 연구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우
   가. 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하여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또는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을지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구비서류) 박사후과정연구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구과정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박사후과정연구원 이력카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박사후과정연구원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박사학위(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5. 연구(사업) 참여 및 경비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구협약체결서사본 등) 1부

제7조(연구중단 및 해임) 총장은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중단을 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과정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기관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하여 해당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는 경우
6. 연구과제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하여는 박사후연구과정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박사후연구과정 지원신청서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3">(국문) (한문)
(영문)</td><td rowspan="4">사 진
3×4cm</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지 원 분 야</td><td colspan="3"></td></tr>
<tr><td>연구과제명</td><td colspan="4"></td></tr>
<tr><td>연 수 기 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td></tr>
<tr><td>학위 취득일</td><td colspan="4">년 월 일 (취득 후 현재까지 : 년 개월)</td></tr>
<tr><td colspan="5">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을지대학교총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분야	

박사후과정연구원 이력카드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 영 문 : 한 문 :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나.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석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박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다. 주요 전문경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담당업무

라. 연구업적

국 내 학술지	국 외 학술지	대 학 학술지	학술회의	특 허	저 서	보고서	합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1) 국내 전문학술지
   (예) 조민수, 이순기, 이계수, 1981.
   에탄올-물 혼합용매에서 전도 도법에 의한 벤존산의 해리에 관한 연구,
   대한화학회지 25(2) : 66-69.
2) 국외 전문학술지
   (예) Carmirand R., Camire C. and Bernier B., 1983. Performance of Picea abies Karst. In plantation in Quebec, Canada, Plant and Soil 73(1) : 3~16.
3) 대학학술지
4)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논문
5) 특 허
6) 저 서
7) 연구보고서
8)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박사후과정연구원(Post-Doc.) 추천서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		영문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외국인) : . .		
국 적			
학 력	학 위 명	취 득 일	취 득 기 관
	학사		
	석사		
	박사		

2. 참여과제(사업)명

과 제 명	
사업시행기관	
연구(사업)기간	
연구경비(수당)	천원/월
과 제 (사 업) 책 임 교 수	대학 학과 (인)

3. 임용내신사항

임 용 부 서	대학(연구소) 학과(학부)
임용요청기간	

위와 같이 박사후과정연구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연구소)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박사후연구과정 증명서

<table>
<tr><td rowspan="3">인적사항</td><td rowspan="2">(1) 성명</td><td>한 글</td><td></td><td rowspan="2">(2) 주민등록
번 호</td><td rowspan="2"></td></tr>
<tr><td>한 자</td><td></td></tr>
<tr><td colspan="2">(3)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연수사항</td><td colspan="2">(4) 소 속</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5) 직 위</td><td colspan="3">박사후과정연구원(Post-Doc.)</td></tr>
<tr><td colspan="2">(6) 연구계약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td></tr>
<tr><td colspan="2">(7) 연수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월)</td></tr>
<tr><td colspan="2">(8) 용 도</td><td colspan="3"></td></tr>
</table>

위와 같이 상기 기간동안 을지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과정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박 사 후 연 구 계 약 서

본 연구계약서는 을지대학교 박사후과정연구원에관한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책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박사후과정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의 연구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가. “갑”은 “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활용한다.

나. “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박사후연구과정연구원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신 분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연구생 신분을 갖는다.

3. 근무시간 및 장소

“을”은 연구활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을”은 연수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을”이 비밀누설 시 “갑”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연구결과물은 “갑”의 소속 연구기관으로 귀속하나, 외부수탁과제 등 외부재원의 경우는 수탁과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연수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6. 연구비 지급

"갑"은 "을"에게 계약 시 총 연구비(수당)_____원을 12분(또는 계약월수)의 1로 하여_____원을 매월 25일자에 연구비로 지급한다.

7. 기 타

가. "갑"은 "을"과 연수계약체결 시 상해보험가입 지원 등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연구과제책임자 : (인)

"을" 박사후연구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직인)